

보도시점 2024. 8. 20.(화) 09:00 배포 2024. 8. 20.(화) 08:30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8월 21일 본격 시행

- ① 기술(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을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 ② 아이디어 탈취 시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③ 법인의 벌금형 3배 강화, 영업비밀 침해 시 그 제조설비까지 몰수
- ④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등

8월 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다. 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비밀의 경우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②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한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㉞법인 벌금형 3배 강화, 영업비밀 침해시 침해품 및 그 제조설비까지 몰수>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행위 위반 범죄는 법인의 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한다.

* (' 17~' 21) 범죄의 법인체 가담 현황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34.3%) >> 전체범죄(1.6%)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생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㉟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종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 붙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설명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최영미 (042-481-8181)
			주무관	한용수 (042-481-5967)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조문	주요 내용
① 징벌배상 등 처벌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제14조의2제6항)	·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
○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제19조)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의 최대 3배로 강화하여 법인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 억제(특허법 등 입법례 有)
○ 영업비밀 침해품 제조설비 등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 (제18조의5 신설)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성된 물건 몰수하여 침해물품 유통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특허법 등 입법례 有)
○ 법인의 공소시효 연장 (제19조의2 신설)	· 공소시효 도과로 법인은 처벌받지 않고 행위자만 처벌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죄의 법인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5년 → 10년)
②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제8조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 특허청의 행정조사 및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는 권고 불이행시 이행강제력이 없어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제 도입
○ 행정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규정 신설 (제7조의2 신설)	· 행정조사 기록(영업비밀 및 기타 비공개 자료 제외)을 당사자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 등에게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행정조사 기록의 법원 송부 절차 규정 정비(제14조의7)	· 법원이 필요시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청구 소송에서 그와 관련된 행정조사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기록 송부 요구 및 영업비밀 보호 절차 규정 신설
③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	
○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의 보호 범위 정비 (제2조제1호카목)	· 비밀로 관리하였으나 공시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았으므로, 데이터의 보호 범위를 정비
○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 규율(제9조의8 및 제18조제3항 신설)	· 현행 부경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 멸실, 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국내유출과 동일)

□ 개정 특허법

조문	주요 내용
① 징벌배상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제128조제8항)	· 특허권 침해행위시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